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2
----------	-----

발의년월일 : 1994. 7. .

발 의 자 : 윤종구의원외 3인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94. 3. 16, 법률제4741호)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94. 7. 6, 대통령령제14317호) 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현행 위원회 조례를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의회에 의회운영위원회 5명, 내무위원회 5명, 산업위원회 7명, 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함. (안 제2조)
- 나. 상임위원회는 의안과 청원심사등을 처리하며, 그 소관사무의 규정을 둠 (안 제3조)
- 다.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으며,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나 의회운영위원회위원을 겸하며,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 토록 함. (안 제4조, 안 제5조)
- 라.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의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함 (안 제6조)
- 마.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은 의장이 추천,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함. (안 제9조)

속초시조례 제 호

속초시의회의회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5 명
2. 내무위원회 5 명
3. 산업위원회 7 명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내무위원회

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지적과, 교통관광과, 민방위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보건소, 문화회관관리소, 여성회관, 동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산업위원회

가.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수산과, 녹지과, 건설과, 도시과, 수도과, 농촌지도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상수도관리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의원은 하나의 위원 (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 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상임위원장) ①상임위원회에 위원장 (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 (특별위원회) ①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

④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선임) ①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 (간사) ①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 (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